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위탁의 경쟁제한
규제 완화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등을 정비하고, 현실에 맞게 조례를
전면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
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목적(안 제1조)
- 나. 복지관 사업기능, 운영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수탁자의 의무, 시설변경 금지 등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복지관은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있는 복지관 건물 주소지로 한다.

제3조(사업기능)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례관리기능
2. 서비스제공기능
3. 지역조직화기능
4.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수행기능

제4조(운영) ①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

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선정위원회에 관해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
⑤ 시장은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의 우선대상)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개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
3.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
4.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·아동 및 청소년
5.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6조(이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7조(시설 사용 등)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 할 수 없다.

제9조(시설변경 금지 등)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대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,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,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약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,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4조제2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

2.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3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4. 수탁자가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5.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제11조(이용자의 변상책임) ①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이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, 재무·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·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체운영)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(변경)신청서

				접수번호	
사용자	성명(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 (단체등록번호)		
	주 소		전화번호		
사용목적 행사내용	목 적				
	행사내용		참석예정인원	명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(일)				
구 분	시설명	사용기간		비 고	
사용시설					
부대시설					
승 인 여 부					
위와 같이 귀 복지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(변경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 성 명 (인)					
귀하					

접수번호	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(변경) 허가서 (다목적강당, 식당, 프로그램실 등)			
사용자	주 소		사용 시설명	
	성 명			
위와 같이 허가(변경)합니다.				
년 월 일 종합사회복지관장				

관 계 법 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배 정 미
	담 당	류 은 주
	담 당 자	이 현 숙 (480-5122)